## KOSHA GUIDE

C - 86 - 2018

- (5) 사업주는 해당 건설사업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2항에 의한 유해·위험방지계획서 작성대상 공사에 포함될 경우에는 해당공사 착공 전일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3항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들은 후 유해·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(6) 사업주는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건설안전보건분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건설현장 내에서의 각종 작업의 내용 및 시공에 사용하는 각종 기계·기구 등을 조사하여 위험을 수반하는 작업내용을 분석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법규에 정해져 있는 안전보건기준에 따라 안전보건 작업계획을 수립하고,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.
- (7) 사업주는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공사 수행 중 예기치 못한 돌발적인 사고로 인해 본 공사 목적물, 자재 및 가설공사에 입은 물적손해 및 제3자에 대한 대인·대물 배상책임 손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보험을 가입 하여야 한다.

## 5-3. 시공단계

- (1)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하여금 건설공사 시공단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안에 대하여 건설안전보건을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실시하고, 건설안 전 관련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준수하여 건설재해예방에 노력하도록 하여야 한다.
- (2)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하여금 건설공사 시공단계에서 안전보건관 리 참여자의 업무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 지를 총괄하고, 필요한 경우 건 설안전보건분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.
- (3)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하여금 산업안전보건법 등 건설안전보건 관련 법규에서 정한 안전보건관리 업무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 하여야 한다.